

OECD가입에 따른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이 영 호 /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식품위생연구부

I. 머리말

지난 30여년에 걸쳐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이제 우리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안정성장 기반을 다지고 선진국 창조를 이루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변화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세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운용방식과 시책을 선진화해야 하고 높아지는 복지에 대한 국민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성장과 안정이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이룩해야 하는 현실에 당면해 있다.

이같은 대내외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의 선진화, 경제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OECD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기구이나 우리 경제의 규모와 위상이 높아지고 대외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이들 선진국가와의 자료와 정보교환은 물론 정책협의와 대응강구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OECD에 가

입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통해 명실공히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선진 경제를 지향하는 마지막 문턱에 선 우리에게도 국제경제문제에 대하여 한 차원 더높은 성숙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우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문제에 관한 논의가 경제발전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이다. 그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우리에게 대한 기대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으로 필요한 두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OECD 가입의 필요성은 우리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협력을 위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장하였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계에서는 OECD 가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OECD의 목적, 성격, 역할, 조직, 가입절차등 OECD의 실체를 수록하여 OEC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경우의 득실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분석하고 우리 식품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술했다.

II. OECD 개요

1. OECD의 목적과 성격

가. 연 혁

OECD는 제2차 대전후 패허가된 유럽 경제를 재건시키기 위해서 발족된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을 모체로 설립된 기구이다. 미국은 2차 대전에서 비록 승리는 거두었으나 파괴된 유럽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또한 전후 강대국으로 등장한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에 대한 원조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수립하여 유럽경제의 부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유럽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이 OEEC이며 1948년 4월에 결성되었다.

유럽등 선진국들의 급속한 발전에 병행하여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도 경제개발과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분출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들의 위상변화에 부응하는 후진국들에 대한 개발원조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선진국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전함에 따라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후진국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을 동시에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중심이 아닌 선진국 여러나라들이 같이 참여하여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회원국간의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당면한 여러가지 이웃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 종전의 유럽중심의 OEEC를 대체하고 새로운 경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기구로써 창설된 것이 OECD이며 1961년 9월 설립되었다.

나. 구 성

OECD는 1995년 3월 현재 2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설립당시에는 OEEC에 가입되었던 서유럽 18개국(Austria, Belgium, Denmark,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taly, Luxemburg, Nether-land,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와 미국, 캐나다를 합하여 20개국으로 구성되었다. 그후 일본이 1964년에, 필랜드가 1969년에 오스트레일리가 1971년에 뉴질랜드가 1973년에 추가로 가입하였고 멕시코가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결성을 계기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동시에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가입 의지와 노력으로 1994년 5월 제25번째의 OECD회원국이 되었다.

선진국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부자들의 클럽(Rich men's club)인 OECD는 이러한 정회원국 외에도 특별한 지위(Special status)를 부여받아 준회원국으로 활동하는 경우(유고)도 있다. 또한 OECD의 각종 위원회나 여러 독립적 기구에 준회원 또는 옵서버로서 참여하는 나라도 많다. 최근에는 OECD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PIT4국(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등 동구권 국가와 아르헨티나등 많은 나라들이 OECD활동에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OECD에 가입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다.

다. 목 적

OECD는 회원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간의 정책협의기구이다.

OECD의 목적은 헌장(Convention, 협정문) 제1조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자유무역의 확대,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이다. 헌장상의 목적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a) To achieve the highes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and a rising standard of living in Member countries, while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and thu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 (가맹국의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최고도의 경제성장과 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달성함으로써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b) To contribute to sound economic expansion in Member as well as nonmemb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 and(경제발전선상에 있는 가맹국 및 비가맹국의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c)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to world trade on a multilateral, nondiscriminatory basi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국제적 의무에 따라서 다각적, 무차별의 토대위에서 세계무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최대한의 경제성장과 고용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비회원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다각적이고 무차별적인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정문 제2조는 다섯가지 사항을 수행하는데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회원국은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둘째,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자원개발을 촉진시키며, 연구와 직업훈련을 진흥한다. 셋째, 경제성장 및 대내외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넷째, 재화·용역 및 경상무역의 거래면의 장해를 축소 또는 폐지하며 자본이동 자유화를 유지·확대한다. 다섯째, 경제개발과정에서 적절한 수단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자본이동을 통한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이해관계나 관심분야가 다르고,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원국간에 콘센서스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OECD가 계속적으로 폐쇄된 조직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성격

최근에 와서 냉전시대를 벗어남에 따라 경제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선진국들이 모여서 공동의 주제를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국의 정책을 토론하는 정책토론장이라고 간략히 줄여 말할 수 있다.

OECD성격은 정책토론과 협의에 있어서도 대립과 경쟁보다 협력과 조화를 기본적 틀로 하기 때문에 UR(Uruguay Round)협상과도 다르고 회원국 중심의 폐쇄된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UN국제기구와 다르고 회원국간 정책토론과 협의가 중심이 되는 점에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같은 다자간 협상기구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여타 국제기구가 무역, 통화, 환경, 개발분야중 특정분야만을 다루는데 비해, OECD는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교육, 소비자 보호등 모든 경제 사회복지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협의 기구로서 각 경제정책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국제경제관계의 4대 기본분야(개발원조, 금융, 무역, 직접투자)외에 환경, 에너지, 산업구조조성, 과학기술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각종 정보교류제공과 회원국간 정책협조를 도모하고 거시·미시적 분야의 경제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도 있다.

또 회원국 경제정책에 대한 감시·협의 기능과 회원국 경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모색의 기반을 조성하기 때문에 OECD는 회원국간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포럼으로서 회원국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카르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요사항을 결정시 OECD에서의 토론과 협의는 Consensus(만장일치)를 이끌어 내는 것을 일반적 원칙으로 하고 결정된 사항은 회원국간의 신뢰 관계에 의해 준수된다. 그러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인 의무나 구속력이 있는 분야도 있다. 그러나 OECD는 특정한 의사결정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로 주요 토의안건에 대한 표결은 없고 찬성국은 규범 수락, 반대국은 규범불참(또는 유보)으로 충분하다. 또는 회원국간에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OECD Convention에 규정된 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체도의 준수, 개도국 원조등의 목표와 절차상의 의무규정, 양대자유화(“자본이동 자유화” 및 “경상무역의 거래자유화”) 규약은 그 자체가 구속성이 있는 의무사항이다.

최초 설립시 유럽의 공산진영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내포하였으나 현재는 다원적 민주정치 체제, 시장경제원리, 인권존중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회원국들간의 동질성을 중시한다. 또한 OECD회원국은 범세계적인 경제기구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EU, NAFTA, APEC등 지역협력체의 구성원이므로 기구 상호간의 협력도 촉진하고 있다.

반대의견을 존중하고 신중한 의견의 청취를 함으로써 회원국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토의의 축적을 통하여 회원국간의 정책조화를 중시하므로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discussion)의 성격적 특징을 갖고 있다. 개별회원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의의 축적을 통하여 회원국간의 정책조화를 중시하므로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discussion)의 성격적 특징을 갖고 있다. 개별회원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는 관련 위원회 토의에 각국의 정책결정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면회의(Confrontation)방식으로 문제점을 협의의 점토한다.

OECD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OECD가입을 UR이후의 또 다른 개방압력 수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OECD가입은 개방압력 수단도 아니고 새로운 의무부담도 아니다. OECD 가입은 우리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청에 의해 개방압력과는 무관한, 우리의 장기적 안목에 의해 결정된 최적의 선택이라는걸 알아야 한다.

2. OECD의 역할과 조직

가. OECD의 역할 재정립문제에 관한 논의

냉전체제하에서 결성된 OECD가 냉전종식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어떤 방향으로 활동영역을 발전시켜야 하는지의 문제가 상주대사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중에 있고 OECD의 유럽중심적 성격의 탈피, 러시아, 중국등 강대국과의 협조체제(framework) 마련, 주요 개도국과의 협력증대, EU, NAFTA, APEC등 지역협력체제와의 관계설정문제등을 다루고 있다.

나. OECD의 조직

OECD의 주요조직은 이사회, 집행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사무총장등의 상부조직과 상부조직의 지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전문분야별 위원회와 사무국등 하부조직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간자문기관(Advisory Body) 및 반독립적 부속기관(Autonomous Body)이 있다.

ㄱ. 각료이사회(Council at Ministerial Level)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년 6월초에 1회 개최된다. 전 회원국 각료들이 참석(외무장관 및 경제장관)한다. OECD의 주요정책문제를 논의하고 G7 정상회담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G7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사의회의 결의는 만장일치(Consensus)를 원칙으로 하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최대한의 합의도출을 유도해 내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루어낸 합의 결과는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결의(Resolution), 선언(Declaration), 합의(Agreement)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ㄴ. 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

OECD주재 각국 대표부 대사로 구성되고 매월 2회 정도(격주) 회합(의장은 OECD 사무총장)한다. 차기 각료이사회 개최시 까지 1년간 각료이사의회의 대리 기

능을 수행하고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상주대표이사회에서 차기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이사회를 보좌하고 이사회 결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성격의 보조 기구이다. 일반적인 안전이나 각종 위원회 보고서는 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에 집행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가 모든 OECD의 관련사항을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로 부터 위임받은 내용과 범위내에서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다. 이들 상임 위원국이 G7 국가의 멤버이기도 하다. 나머지 집행위원회국은 회원국가 중에서 교대로 맡게 된다.

㉕. 특별집행위원회(Special Executive Committee)

'72년 1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되었고 이사회를 보좌하고 있다. 금융, 무역, 투자등 국제경제상의 주요문제를 특별히 검토하고 회원국의 차관 또는 차관보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㉖. 위원회 및 작업반(Committee & Working Party)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경제 문제에 관한 토의를 하는 것은 위원회이다. 실제의 OECD활동은 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OECD의 활동영역 즉 경제, 사회, 과학기술, 무역, 농업, 환경, 교육등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수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이사회 결의에 의거 변동될 수도 있다.

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은 위원회 산하의 각종 실무작업반(Working Party) 및 전문가 그룹(Expert Group)이다. 위원회 산하의 조직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 변동이 될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도 한시적인 것도

많다. 현재 OECD에는 약 200여개 이상의 실무작업반 조직이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1년에 3~4차례 개최된다. 이 회의는 회원국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하기도 하지만 회원국 상주대표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㉗. 민간자문기관(Advisory Body)

OECD는 경영자 및 노동자와의 협의를 위한 민간자문기관으로 기업, 산업 자문위원회(BIAC :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를 두고 있다.

㉘. 반독립적 부속기관(Autonomous Body)

OECD내에는 각종 위원회 및 작업부에 비하여 설립목적이나 회원의 가입절차면에서 신축성 혹은 특수성을 갖는 반독립적 부속기구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원자력에너지기구(NEA), 개발센터(DC), 교육연구혁신센터(CERI)등이 있다.

㉙.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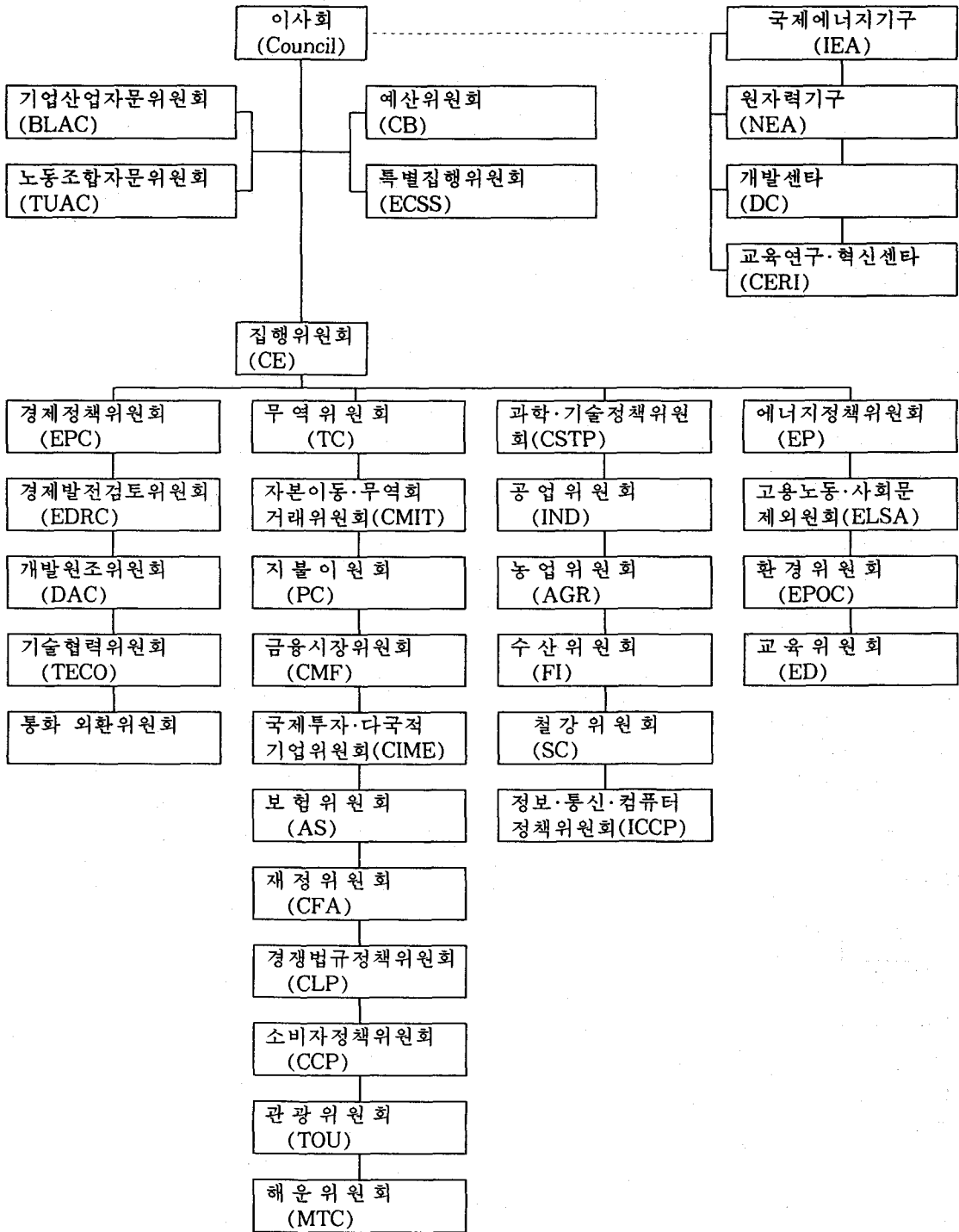
사무총장은 상주대표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국을 지휘하여 OECD의 제반활동을 기획, 관리, 조정한다.

㉚. 사무국(Secretari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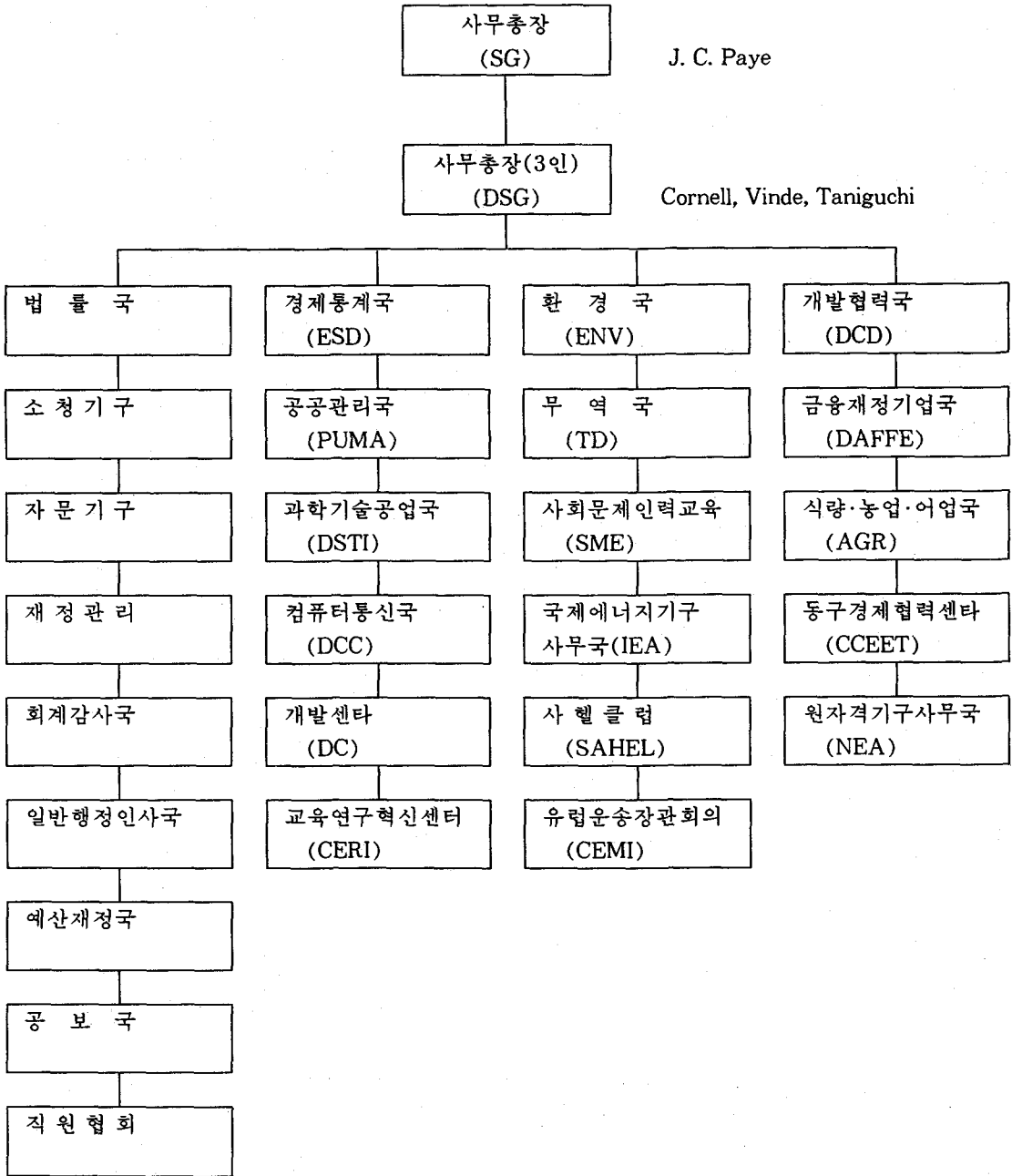
OECD위원회 자체는 특별한 하부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OECD사무국은 현재 임기 5년의 1명의 총장, 3명의 부총장과 1명의 총장보를 포함해 약 1,9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적인 회의준비나 서무, 사서등의 업무는 사무보조원에 의해 행해진다. 사무국에서는 영어와 불어가 공통으로 쓰이고 있다.

OECD조직표 <표 1>와 사무국 조직표 <표 2>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OECD 조직표



※ OECD 사무국조직



3. 가입절차

가. 가입규정(헌장 제16조)

OECD 가입절차에 관한 명문상의 규정은 OECD 헌장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다. 동조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결정에 의해 가맹국의 의무를 수락할 용의가 있는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도 이 협정문에 대한 가입을 초청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한다. 다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는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기권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안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모든 가맹국에 적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기탁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Article 16)

The council may decide to invite any government prepared to assume the obligations of membership to accede to this convention. Such decisions shall be unanimous, provided that for any particular case the council may unanimously decide to permit abstention, in which ca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6, the decision shall be applicable to all the Members. Accession shall take effect upon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epositary Government.

일반적으로 다원적 민주국가(Pluralistic democracy), 인권존중(respect of human right), 시장경제체제유지(market economics), OECD 규정준수(Keep OECD's rules and discipline)등이 동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나. 가입절차

가입절차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다. 다만 헌장의 내용, 과거의 선택 기타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 가입의사의 표명

OECD 사무국이나 주요 회원국에 대하

여 OECD에의 가입의사가 있음을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표시하여 가입희망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OECD검토

OECD 이사회는 특정 가입희망국가가 OECD회원국으로서의 제반 의무를 수락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지 또는 기존 회원국으로서의 제반의무를 수락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지 또는 기존회원국으로서의 동질성이 있는지 등 가입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3. 구체적협의의 진행과 검토

가입 1~2년전에 가입희망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며 동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협의기간중 해당국가에서는 OECD 의무사항에 대한 수락, 유보여부, 가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하게 된다. 동 협의의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며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게 된다.

4. 이사회 수락 및 서명

OECD와 가입희망국 사이의 협의사항은 OECD 이사회에서 수락하게 되며 만장일치 형태로 승인하게 된다. 이후 해당국 대표와 OECD사무총장 사이에 양해각서가 서명되고 교환된다.

5. 가입희망국 국내절차 완료 및 가입서 기탁

가입희망국은 국내 법규에 의한 비준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동 결과를 기탁서의 형태로 OECD사무총장과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회원국이 서명하게 된다. 이 기탁서의 사본을 프랑스 정부가 모든 회원국에게 전달함으로써 형식상 가입이 완료가 되는 것이다.

III. OECD 가입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득과 실

1.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

첫째, OECD 가입은 세계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뜻하므로 국내식품산업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선진국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선진외국과 수출입 업무시 또는 기술 제휴시 국내 식품산업체들도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OECD 가입을 계기로 국내 식품업계와 관련된 제도와 제반시책이 선진화 될 수 있다. 먼저 정부가 추구해온 행정의 세계화에 따라 정부의 식품에 관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또한 업계의 대정부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에도 우리 정부가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고, 기존의 회원국들이 발전시켜온 위생관리 전산화체계 HACCP(위해분석중점관리제도: Hazard Analysis-Critical Control Point), Recall 제도와 같은 우수한 제도를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셋째, OECD 가입으로 인해 국내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앞당기고 경제 운용의 방식도 선진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식품산업도 국제화됨에 따라 식품위생관리를 선진화 시켜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은 보다 위생적인 식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식품산업체들도 국제적인 기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각 업체들의 과감한 투자가 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식품산업의 국제화에 따라 국내 식품산업도 대외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생산된 식품의 기준 규격도 국제화 되어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되고 식품의 원료 수입도 자유화 되어 국내 식품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식품산업의 기업활동에서도 공정 경쟁원칙이 강조되고 금리가 싼 자금을 쉽게 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가입에 따른 손실

OECD가입시 예상되는 손실은 각종 의무

사항의 이행에 따른 부담이라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부담은 가입에 따른 분담금이나 개발도상국 원조, 기타 OECD활동을 뒷받침해줄 행정지원에 따른 비용등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우리나라에서 해결 가능한 범위이고 「세계화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식품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식품시장을 완전개방하 여야 하고 이는 경제전쟁,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식품업체는 영세한 중소기업체들로서 외국 굴지의 회사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의욕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어 식품전분야의 생산실적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간접적인 혜택의 배제로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의 혜택을 잃게 됨으로써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포기해야 한다.

셋째, 식품관련 시책과 제도를 국제화 하 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성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약은 제품 개발의욕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넷째, 선진국들과 국제규범을 공유해야 함으로써 국내의 식품업체들은 보다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해야하고 또한 품질관리제도의 완벽을 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압박을 초래할 수도 있다.

IV.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선진국들의 국내 식품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OECD 가입에 따라 개방폭도 UR협상때보다 훨씬 크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식품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원료, 기술, 제도, 유통구조등의 수준이 매우 낮다.

특히 식품산업은 타 산업부문에 비해 자본구조가 취약하고 또한 성장력도 매우 약하다. 따라서 OECD 가입후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보다 성숙

된 자세로 착실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OECD의 식품산업에 관련된 규정과 대응방안

OECD규범(ACTS)에는 결정(DECISION)사항 38개, 권고(RECOMMENDATION)사항 107개, 각료선언(DECLARATION)사항 10개가 있다. 특히 식품산업과 관련된 결정사항 중 환경결정사항은 13개가 있는데 중요한 결정사항을 몇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상호협력 조사 및 위험감소 국가적 국제적 협력강화가 환경과 일반대중이나 근로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피해의 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제정된 결정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감소 대책의 하나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에 안전성 실험만을 실시하고 국제적 상호협력에 대한 제도는 없다. 그러나 본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화학물질의 위험감소를 위한 현재 국내의 대책을 강화하고 유해물질 관리정책의 기본이념이므로 규정을 수락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유해물질 및 유해지표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예로 햄의 유해가능지표로서 대장균, 리스테리아 및 발색제등의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HACCP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식품과 관련된 유해물질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나. 화학물질의 체계적 조사

현 시점에서 OECD규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건부 수락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립해야 할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화학물질의 생산, 사용, 거래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선진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국내에서 대량 제조되거나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조사하고 목표화한다.

둘째, OECD규정과 상이한 아국 규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과학적 반박 자료를 준비한다.

셋째,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규중 화학물질 평가방법(검사, 분석방법)의 OECD규정과 조화 및 개선한다.

넷째, 기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적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OECD회원국의 프로그램을 검토 분석하여 국내 적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 화학물질 평가데이터의 상호 승인

화학물질 실험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원국내 부족한 실험설비와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회원국간에 화학물질 평가와 인간과 환경보호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되는 실험데이터를 상호 승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제정된 규정이다.

대응책은 첫째, 관련연구소(산, 학, 연)의 실험인력 및 장비 보유실태 및 개선점을 조사한다. 둘째, 유망 중소기업의 실험장비 구입시 특혜를 부여한다. 여기에는 저리용자·세금감면 혜택등이 있다. 셋째, 식품관련 실험지침, 분석방법이 신속한 분석방법 및 정도를 향상 제고한다. 넷째, 식품관련 분야의 OECD데이터의 검증기관을 육성한다.

라. 우수실험실 운영의 준수에 관한 상호 승인 중복된 불필요한 화학물질 시험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필요성과 부족한 시험설비와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상호승인에 관해 조건부로 수락함으로써 대응책은 첫째, GLP(Good Laboratory Practice)기관의 선정, 운영등을 규정하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GLP준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실험설비를 확보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안으로 가칭 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제2안으로 기존 식품위생법을 보완하여 GLP관련사항을 제정한다. 이외에도 관련 연구소의 인력,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마.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의 준수

GLP실시 준수여부에 관한 감시절차의 일 치된 접근으로 타국가의 절차에 대한 신뢰 성을 크게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된 결정 규정이다. 국내에서 수립해야 할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GLP 준수감시기관을 설립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 학, 연의 국내 화학 물질 그룹위원회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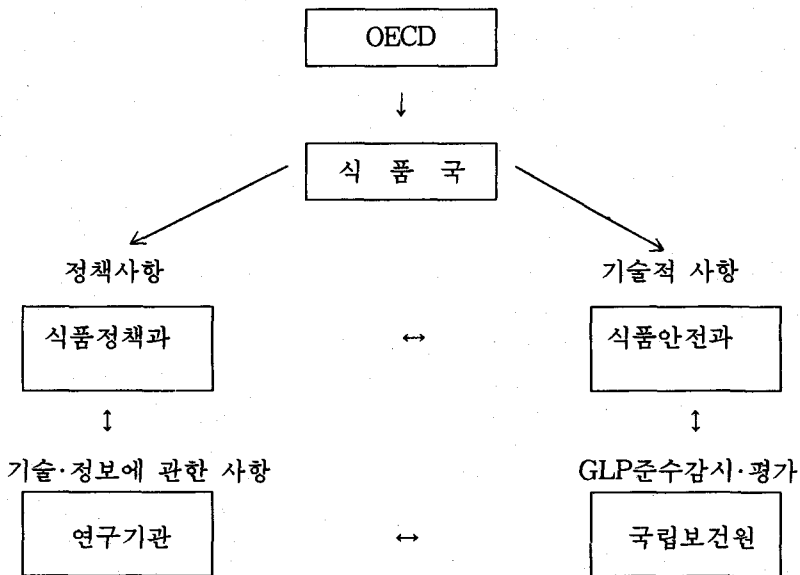
둘째, 각 실험실로 하여금 GLP지침을 준 수하도록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GLP준수프로그램 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각 실험실에

GLP지침을 적용받지 않은 연구와 원칙에 따르는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OECD회원국중 GLP지침을 준수하 는 실험실 방문 및 OECD 주최 GLP프로그 램에 적극 참여한다.

넷째, 실험실의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SOP)를 재정립한다.

다섯째, OECD GLP관련 사항의 적극적 대처 및 국내 관련연구소의 GLP수준으로의 향상을 유도한다. 정책적 사항과 기술적 사 항을 나누어 다음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OECD 운영기준에 따른 식품분야의 담당기구 설치(안)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수단이 민간주 도, 개방화, 자율화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 어 가고 있는 현실점에서 어떤 특정산업을 관리한다는 것이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지 만 OECD가입에 따른 식품산업의 대책이 시 급히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국내 식품시장이 개방되고 있 으나 국내 식품산업이 아직 원료나 기술적 인면에서 대응방안이 부족하고 식품산업 성 장 속도가 타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요인들로 식품산업육성대책 수립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96년에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거 의 확실시 되어있고 이와 관련하여 식품산 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라 행정, 기술, 시장구조산업 OECD 규정적인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식품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독자적인 발전체계의 구축

식품산업은 생산된 식량을 가공하여 식량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할 뿐만아니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의 영양상태를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산업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전체식품가공업체의 84%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업체이고 90%정도가 개인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기반이 매우 약한 것이 현실이다.

OECD가입으로 식품산업도 내수위주의 산업에서 국제적 무역이 활발한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식품업체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영금융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제상 지원, 기술지원금, 설비투자지원금등 여러가지 금융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 식품관련 기구의 확충 및 행정요원의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미국의 FDA (Food & Drug Administration)와 같은 조직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함께 식품산업을 산업적 차원에서 지원, 육성해 줄수 있는 관계법규의 개정 또는 신설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고 자체관리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업체나 식품연구원등과의 유대를 더욱 긴밀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따라 국내식품산업의 국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영세식품 가공업체는 전문화를 통해 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생산의 전문화는 대기업과의 상호분업생산체계의 형성이 가능하여 내수기반의 확충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국내식품산업체들도 과감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및 경영개선등으로 국제경쟁력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독자적인 발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 원료수급문제와 생산기술의 낙후도 식품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식품의 원료는 주로 농·수·축

산물로서 국내 생산된 것과 수입된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 식품원료 생산자들은 대부분 식품가공 능력이 없다. 따라서 식품원료 생산자들이나 중소식품가공업자들의 협조하에 보다 효율적인 식품생산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계열화(Integration)나 협동조합(Cooperative Federation)체계를 설립하여 생산마진을 합리화 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열화나 협동조합을 구축함으로써 여러단계를 거치는 유통구조의 모순점을 보완하여 자체판매경로를 확립시켜야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3. 신제품 개발에 의한 경쟁력 강화

식품의 특성중에 인체의 성장이나 유지를 위한 영양소 공급이외에 풍미(Flavor)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 식품의 풍미는 인종, 국가 또는 지형적인 차이에 따라 그 기호성도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식품은 우리나라 식품업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장점을 이용하여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식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식품산업의 경쟁사는 일본의 다니카 회사도 될 수 있고 덴마크의 요한센회사나 전세계 어느 식품회사도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OECD의 가입을 국내식품업체 발전의 디딤돌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 WTO체제의 출범등 국내외 주변여건의 변화에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최근 여성취업인구의 증가와 식품소비 추세의 변화등을 고려한 제품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식습관이 바뀌어 외식산업의 발전이나 Fast Food매장의 증대등 새로운 식문화가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식품업체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소비자 기호도 여론조사, 제품개발, 품질보증등 선진화된 기업경영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최근 식품 선호도를 보면 식품의 편의성(Convenience)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여성노동인구의 증가나 레저(Leisure)문화의 발전도 식품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조장하고 있다.

국내식품업체는 전통적인 맛을 함유하고 먹기에 편리한 식품을 개발하여 국내식품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OECD 가입과 더불어 국제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다양화, 품질의 고급화, 간편화 및 건강 지향화를 추구해 나가며 선진국의 위생기준에도 적합한 양질의 식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부자나라 클럽」의 회원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식품원료의 수급, 자본, 식품생산기술, 위생관리기술, 그리고 유통부문등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작년 경상GNP(국민총생산)가 3백2조9천억원으로 세계경제규모순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일인당 GNP세계순위도 32위로 높아졌다. 한편 '95년 3월 16일 기준 우리나라 경제는 GDP기준으로 지난 '91년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은 8.4%의 실질 성장을 기록했으며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은 7,513달

러에서 8,483달러로 970달러가 늘어났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위상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민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WTO 출범과 OECD 가입에 따른 부담은 우리식품산업이 넘어야 할 새로운 도전임을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동반한다. OECD가입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효율화와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수반할 것이다. 토마스 칼라일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가 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한다」. 약자가 될 것인가 강자가 될 것인가는 우리 식품업체의 선택이다.

〈참고 문헌〉

- 김광임외 10명 1994. 6. OECD가입과 한국의 환경정책 개선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1992 한국식품연감, 농수축산 신문
- 1994. 6. OECD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의 가입추진, 외무부
- 김재수 1994 OECD와 한국농업, OECD 농업국